



제 420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20호)

2025.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등 지급주체 명확화 및 현황조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11. 13.

다. 회 부 일 : 2024.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근거 규정이 없고,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주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당 지급에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불성실하게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복무기간 연장 조치 등을 하고 있으나, 타 직종의 대체 복무자와 같이 수당 제한 조치를 추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정책 수립 시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등 처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보수 현황을 조사하고,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된 기관에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수당을 제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Ⅲ. 검토의견

1.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등 지급주체 명확화 및 현황조사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의 지급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수당 감액 근거를 마련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보수 등) ① <u>공중방역수의사</u> 에 대하여는 <u>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u> 지급한다.	제16조(보수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u> ----- <u>보수를</u> ----- -----.
<신설>	② <u>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u>
<신설>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u>

현행	개정안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준-----.

보수 등의 지급주체 명확화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6조제1항¹⁾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현재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의 지급주체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예규인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① 보수 및 복리후생비²⁾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급하고, ②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기타수당은 배치기관의 장이

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수 등)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2)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의 복리후생비 보수지급기준에서는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등의 지급주체를 법률에서 규정하되, 현행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① 보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급하고, ②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등의 지급주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수 등의 지급에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등 지급주체 】

구분	현행	개정안
보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수당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복리후생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관련사항 미포함

3)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8. 보수 및 후생복지

가. 보수·여비

(1) 지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보수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배치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기타수당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할 시·도지사는 배치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중 방역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로 유사 제도인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경우,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11조에서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의 지급주체를 명확하게 규정⁴⁾하고 있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수당 감액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보고 이후의 조치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예규인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서 주의, 경고, 연장근무,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중지, 고발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⁵⁾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예규에 규정된 불성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중지와 같은 수당⁶⁾의 감액 조치에 대한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②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

5)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후미의 [참고 2]에 기재하였음

6) “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지급되는 방역활동장려금은 직무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수당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법제처는 유사한 제도인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법령해석 사례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수당으로 본 바 있음.(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4-0132, 2014. 5. 22.)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임.

다만,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수당 감액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 불성실의 정도와 수당 감액 간의 균형 잡힌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는바,

그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으로 정하기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기준에 대하여 법제처 심사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수당 감액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하위 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안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

수당 등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유사 제도인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특수지근무수당 미지급⁹⁾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2021년 법률 개정을 통해 「농어촌의료법」에 보수등 현황조사를 규정하고,¹⁰⁾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7) 참고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도 공중보건의사 중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지침인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지침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하는 방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8) 현재 개정안 부칙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9)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소위12-12호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보수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직의사가 배치된 기관 등에 공중보건직의사의 배치 취소 등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예규인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방역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배치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가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¹¹⁾ 현행법에는 시정요청의 전제가 되는 수당 등 지급실태 파악 관련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지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²⁾

현황조사의 대상에서 「농어촌의료법」과 달리 보수가 제외되는 것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보건직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직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보건직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8. 보수 및 후생복지

가. 보수·여비

(1) 지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보수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배치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기타수당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할 시·도지사는 배치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중 방역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2) 또한, 공중방역수의사의 업무 만족도 영향 요인으로 급여 수준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바(김우찬 등, 『2019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실태조사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제16권제2호, 2024), 업무 만족도 개선을 위한 자료를 수당 등의 현황조사 과정에서 획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농어촌의료법」에서는 공중보건의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공중보건의를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존재하나,¹³⁾ 개정안은 모든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급하도록¹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임.

한편, 유사 입법례인 「농어촌의료법」에서 보수등 미지급 기관에 대하여 공중보건의 배치 취소, 감축 등의 후속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¹⁵⁾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등에 대한 현황조사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배치기관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와 관련하여 보수 등의 지급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된 명시적인 위임근거와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수당 제한 근거 및 처우 수준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 및 내용¹⁶⁾으로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5)”이 현재

1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 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를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14) 안 제16조(보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15) 또한 현재 소위원회 계류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안에서 현황조사의 후속 조치로서 배치 취소 또는 감축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16)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등에 관한 현황조사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향후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7

참 고 1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상 보수지급기준

1. 보수 (지급주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근무기간 보수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비고
1. 봉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 2024년 기준 - 중위 1호봉 : 2,041,400원 - 중위 2호봉 : 2,142,200원 - 중위 3호봉 : 2,243,000원
2. 가족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배우자 - 존·비속 등
3. 가족방역수당	월 20,000원			
4. 정근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지급			

2. 복리후생비 (지급주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근무기간 복리후생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비고
1. 명절휴가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지급 (연 2회, 봉급액의 80%)			- 추석 및 설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
2.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배치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3. 기타수당 및 여비 (지급주체: 배치받은 기관의 장)

근무기간 기타수당 및 여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비고
1. 초과근무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배치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2. 특수지근무 수당, 위험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배치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특수지근무수 당은 울릉군청 근무자에 한함
3.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급 (여비지급기준표의 제2호 적용)			- 배치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4. 방역활동 장려금	월 60만원 (가축방역업무 수행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 배치기관 예산범위 내에서 기준금액의 50%까지 상향 지급 가능)			- 배치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참 고 2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상 불성실 공중방역 수의사에 대한 처분의 종류 (가축방역업무 관련)

불성실 사항	처분	처분에 따른 조치사항	처분기관
○ 방역업무 불성실 로 민원을 유발 시킨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귀책 사유가 있 는 경우	○ 1차 주의 ○ 2차 경고		○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검역본부장
○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규정 된 의무를 위반 한 경우	○ 경고		○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검역본부장
○ 12개월 이내에 2 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이 결정된 직후 가장 먼 저 도래하는 방역활동장려 금 지급 시점 부터 3개월간 방역활동장려 금 지급 중지	○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검역본부장
○ 무단지참, 조퇴 또는 정규 근무 시간 중 직장 에서 이탈한 경우	○ 경고 및 이탈일 수의 5배수 기 간 연장근무(이 탈시간 5배수 계산 후 8시간 을 연장근무 일 수 1일로 계산)	○ 처분이 결정된 직후 가장 먼 저 도래하는 방역활동장려 금 지급 시점 부터 3개월간 방역활동장려 금 지급 중지	○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검역본부장

불성실 사항	처분	처분에 따른 조치사항	처분기관
○ 동물병원에서의 진료행위 등 공중방역수의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 7일 이내	○ 경고 및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수 기간 연장근무	○ 처분이 결정된 직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시점부터 12개월간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중지	○ 연장근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역본부장
- 8일 이상	○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병역법에 따른 조치), 병무청장에게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 지역을 이탈하거나, 무단결근 등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이내	○ 경고 및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수 기간 연장근무	○ 처분이 결정된 직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시점부터 12개월간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중지	○ 연장근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역본부장
- 8일 이상	○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병역법에 따른 조치), 병무청장에게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